


nepes

협력업체 윤리규정




개정 일자 : 2015.10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4
		Rev.	-
		제정일자	2015.10.01
	협력업체 윤리규정	개정일자	-

협력업체 윤리규정 목차

제1장 개요.....	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
제3장 규정 위반 시의 조치	5
제4장 부칙.....	5
별첨1 제보관리 기준.....	6
별첨2 윤리경영 준수 서약식 (양식).....	7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4
		Rev.	-
	제정일자	2015.10.01	
	협력업체 윤리규정	개정일자	-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네패스와 협력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협력업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운영)

1. 협력업체 임직원은 본 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패스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2. 협력업체 대표자 및 네패스와의 거래에 대한 실무 책임자는 본 규정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규정을 네패스의 윤리경영 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직무수행 자세)

1. 협력업체 임직원은 네패스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협력업체와 그 임직원은 네패스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6조 (금지사항)

협력업체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네패스 임직원, 가족 또는 임직원과 관련된 제3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안, 제공, 약속할 수 없다.

1.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2.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3. 네패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 행위
4. 담합 행위 및 제 3자와의 불법 또는 비밀 하도급 거래 행위
5. 네패스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이윤 추구 행위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4
		Rev.	-
	제정일자	2015.10.01	
	협력업체 윤리규정	개정일자	-

6. 출장 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7.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제공 및 취득 행위

제3장 [규정 위반 시의 조치]

제4조 (위반 사항의 신고)

1. 협력업체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네패스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8조 (위반 사항의 처리)

1. 네패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며,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고, 재발방지 촉구, 일정기간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부칙]

제9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4
		Rev.	-
	제정일자	2015.10.01	
	협력업체 윤리규정	개정일자	-

#별첨 1 : 제보관리 기준

1. 제보처리 원칙

- 1)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히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2)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 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4) 제보 내용은 네패스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제보인에게 통보 드립니다.

2. 제보 유형


- 1) 금품 (금전, 선물, 상품권 등) 수수 행위
- 2) 향응, 접대 수수 행위
- 3) 불공정 거래 행위
- 4) 차별 (부당) 행위
- 5)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 6) 기타 비윤리 불법 행위 등

3. 제보 방법

비윤리행위 고발은 전화, 구두, 서신, 이메일, 웹 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고발 대상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화 : 043-240-0265
- 이메일 : ethics@nepes.co.kr
- 웹신고처 : <http://goo.gl/forms/CpMXnFHP2v>
- 홈페이지 : www.nepes.co.kr 내 '비윤리 제보하기'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32 (주)네패스 윤리위원회
- QR 코드 :



	<h1>사 내 규 정</h1>	문서번호	NPS- 07 - 04
		Rev.	-
	협력업체 윤리규정	제정일자	2015.10.01
		개정일자	-

#별첨 2 :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 (양식)



[협력업체]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네페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협력업체 윤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협력업체 윤리규정을 인지하고 네페스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또는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네페스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등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네페스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네페스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네페스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습니다.
6.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모범이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행동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력업체 윤리경영 준수 서약"에 의거,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회 사 명		
	대표이사		(직인)
	실무책임자	소속	
		직위/직책	
	성명	(서명)	

㈜ 네페스 윤리위원회 귀하